

보도

올해 입학생부터 재수강 과목 성적표에 남는다

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 휴학제도 종류 늘어나

학사운영 개정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 후에도 성적 증명서에 재수강과 학점포기 기록이 남게 된다. 기존 재수강 제도 관련 조항에는 ‘기 취득한 성적은 졸업 예정학기부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적증명서에 기 취득한 성적이 ‘R’로 표시돼 따로 기록된다.

학점포기 제도 역시 기존에는 졸업 예정 학기인 8학기 차 이전까지는 성적증명서에 해당 학점을 ‘W’로 표기했다가 8학기 차부터 삭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에도 영구적으로 학점포기 기록이 남게 됐다. 단, 상기 개정사항들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성적이증표기금자를 권고했다”며 “성적이증표기란 실제 수강 과목의 성적과 성적증명서의 성적 기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재수강제도 및 학점포기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입학생부터 성적증명서에 기취득 성적이 'R'로 표시된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휴학제도의 보완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정식 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과 ‘창업 휴학’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휴학’과 ‘군입대 휴학’, ‘특별 휴학’, ‘유급 휴학’의 네 종류로 운영되던 현행 휴학 제도는 총 여섯 종류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또는 만 7세 이하(및 취학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학과, 창업 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이 가능해졌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경우 1회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창업 휴학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 학기 최대 1회만 가능하다. 또 창업 휴학의 경우 4학기 이상

을 이수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가능하며 사전에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소속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휴학제도는 추가됐지만 특별휴학의 경우 규정은 업격해졌다. 현행 규정에서는 ‘일반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라면 특별휴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휴학 연한 만료자는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이 졸업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학생 본인의 질병 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휴학할 수 있게 됐다.

휴학제도는 추가됐지만

특별휴학 규정은 엄격해졌다

	기준 규정	개정 규정
제 3조 등록절차	학점취득이 가능한 모든 학점을 수강학점으로 산입한다.	학점취득이 가능한 모든 학점을 수강학점으로 산입한다. (학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제 13조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 군입대 휴학, 특별휴학 가능	일반휴학, 군입대 휴학, 특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휴학, 유급휴학 가능
제 36조 재수강	재수강을 한 경우에는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R로 표시하고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졸업 예정학기부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재수강을 한 경우에는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R로 표시하고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졸업 예정학기부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삭제)
제 39조 학점취득방법	계절학기 과목수강	계절제 수업 과목수강
제 50조 학점포기	학점포기한 과목은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하되, 졸업 예정학기부터 해당과목을 삭제한다.	학점포기한 과목은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한다. (‘졸업예정학기부터 해당과목을 삭제한다.’ 삭제)

따라서 소속 대학장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휴학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 사유별로 1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표현의 모호성으로 휴학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의 사유가 아닌 본인의 사유일 경우에만 휴학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의 규정 하에서는 ‘지인의 질병’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의 등록금 납부 기준의 모호한 부분이 보완됐다. 기존의 납부 기준은 ‘4학점 미만 신청 시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납부’, ‘4학점 이상~6학점 미하 신청 시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납부’, ‘7학점 이상~9학점 미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였지만, 이 중 수강 학점이 6학점과 7학점 사이인 경우에는 납입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 자연수로 떨어지도록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가령 6.5학점을 이수코자 하는 경우, 6학점으로 계산해 등록금 납부 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준	
수강학점	수업료
4학점 미만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미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미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수정안	
수강학점	수업료
3학점 미만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미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미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학사지원과 관련 권리문 발송예정 “세칙 심의하지만 판단은 단과대학 몫”

전공기초 인정여부 논란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조재신 기자 delphio@knu.ac.kr

우리신문이 보도했던 ‘캠퍼스간 자연계열 전공기초 인정여부’ 논란(대학 주보 제1585호 5면(2015.03.02.))에 대해 학사지원과가 ‘권고문 발송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권고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과대학별 전공기초과목 인정여부 원칙을 학사지원과로 제공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단과대학이 서로 상이하게 시행하고 있는 전공기초 선택과목 인정여부 원칙을 모두 제공받아, 각 해당학과들의 결정이 옳은지 여부를 종합적 관점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과대학 행정실측은 내부적으로 진행된 ‘캠퍼스간 자연계열 전공기초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사

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학사지원과에 넘긴 바 있다. 회의록을 넘겨받은 후, 학사지원과는 이에 대해 관련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학사지원처의 한 관계자는 “학사지원과 내부에서도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들이 서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일부 학생(다전공생, 전과생)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사지원과는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학사지원과 측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전공 교수님의 고유 영역”이라며, “우리는 단지 이번 권고문을 통해 해당 학과의 ‘판단기준’을 취합하여 이 기준이 전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심의하게 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5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이수

2015학년도 1학기 자유이수 과목 ‘사회봉사1,2,3,강좌의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설내용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수구분	자유이수
과 목 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단계별 이수)
학점체계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증서는 물론 활동 기관 중 선정 ⇒ 사회봉사활동 등 ⇒ 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증진 및 실증지 작성 ⇒ 성적증명 기간 내 제출
제출서류	학교이수신청서(봉사활동증명서), 사회봉사활동증명서(봉사활동증명서), 학점이수증
기타	제출기간 : 2015.5.26.(화) ~ 5.6.(금)
제 출 처	생활과학대학 612호 지구사회봉사단(GSC)
봉사시간 및 학점인정 기준	현행은 1학기 4시간 인정, 학기당 2학기까지 제출 가능(현행 혹은 vms에서 제출 가능) ⇒ 32시간 이내의 봉사활동 한 경우도 1학기당 3학점까지 이수 가능(1학기 이수 시 32시간 봉사활동 이수) ⇒ 입학 이후 활동(봉사 중 활동 포함) 한 모든 봉사활동으로 현학 취득 가능
경우 인정	1365_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학프로젝트(www.donghaeng.seoul.ac.kr), 사회복지부처 봉사활동 인증증명서(www.vms.or.kr) 사이트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인정
부록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단, 담당부서(지구사회봉사단)와 협약된 된 봉사활동만 인정(사회봉사 카페 참조)

※ ‘사회봉사온라인네이션’ 2015.03.11. (수) 12:00 ~ 13:30 , 크라운관

※ 사회봉사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출 서류는 반려되지 않습니다.

※ 사회봉사 관련 제출 양식(활동증명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실증지)과 그 외 참고사항들은 사회봉사 카페(www.club.knu.ac.kr/husge)에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인정인은 봉사활동인정 확인장을 회장하는 학생은 생활과학대학 612호 지구사회봉사단 사무실을 방문할 시, 기관인 기부를 확인해 주세요.

※ 사회봉사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시 지구사회봉사단은 학점에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2014-학기 이후부터 F학점을 넣었을 시 성적에 자동 삭제가 되지 않으며 재수강을 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학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에

3월 셋째 주(3.16~3.20) 취업진로 프로그램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 명	모집부문	일 시	장 소
현대건설 채용연계형 인턴채용면담	사업지원(현장사업관리, 구매/외주, 주택영업, 글로벌마케팅, 기획, 경영지원) 기획, 전기 등	3.16(월) 11:00~15:00	청운관 1층 상담실
현대건설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설명회		3.16(월) 16:00~18:00	청운관 B117호
BGF리테일 채용면담	영업관리, 전략기획, 재경지원, 상품운영, 전문직군	3.17(화)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BGF리테일 채용설명회		3.17(화) 16:00~16:00	오피스홀 11호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休)학생 및 출입생(현장사업 관리 및 출입증명서)은 각각 기관별로 출입증명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현장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1:1 취업진로지도 및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출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를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오비스홀 354호~356호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의방	제법과대학 107-2호 취업진로 자원처	총장정부시스템 - '수업/상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집단 상담	이중구 교수 (취직처 연구 실)장금 교수, 대기업 상담			